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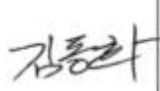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검토	승인



(주)디에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검토	승인
		
25.12/15	25.12/15	



(주)디에스시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5
제2조 【정의】	5
제3조 【적용범위】	5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6
제5조 【사고예방책임】	6
제6조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6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조직의 구분】	7
제8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7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
제10조 【관리감독자】	8
제11조 【안전관리자】	8
제12조 【보건관리자】	9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제14조 【회의 등】	10
제15조 【회의록 작성·보존】	10
제16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11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 【교육의 구분】	11
제18조 【교육담당자】	11
제19조 【교육계획수립】	11
제20조 【책임】	11
제21조 【정기교육】	11
제22조 【관리감독자 교육】	12
제23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12
제24조 【특별안전보건교육】	13
제25조 【교육강사】	13
제26조 【교육방법】	13
제27조 【교육주기 등】	13
제28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13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9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14
제30조 【안전·보건진단】	14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14
제32조 【성능유지】	14
제33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14
제34조 【안전인증】	15
제35조 【안전검사】	16
제36조 【안전검사의 주기】	17
제37조 【안전검사결과 조치】	17
제38조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17
제39조 【점검방법】	17
제40조 【점검결과의 조치】	17
제41조 【안전기준】	18
제42조 【표준안전작업지침】	18
제43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18
제44조 【작업중지】	18
제45조 【안전·보건표지】	18

제5장 보건관리

제46조 【건강진단의 구분】	19
제47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19
제48조 【진단결과의 조치】	19
제49조 【작업환경측정】	20
제50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조치】	20
제51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20
제52조 【유해물질 표시】	20
제53조 【보호구착용 작업 등】	20
제54조 【작업복】	21
제55조 【보건수칙】	21
제56조 【보건기준】	22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6조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22
제57조 【긴급조치】	22
제58조 【비상연락망】	22
제59조 【사고조사 및 보고】	22
제60조 【재해분석】	23

제7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61조 【근골격계질환예방】	24
제62조 【유해요인조사】	24
제63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24

제8장 위험성평가

제6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25
제6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25
제66조 【위험성평가 주기】	25
제67조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	25

제9장 보 칙

제68조 【안전·보건 제안】	26
제69조 【표창】	26
제70조 【징계】	26
제71조 【문서기록 보존】	26
제72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26
제73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26
제74조 【규정의 준수 등】	26

【제 · 개정 이력】

연번	제 · 개정일	제 · 개정 사유	비 고
1	2023.11.13.	최초제정	
2	2025.12.15	적용범위 개정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디에스시(이하 “당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당사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문서는 DSC 국내·외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이하 “DSC그룹”)를 포함한 전 사업장과 이에 소속된 전 임직원 및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본 문서 내의 모든 하부 조항에서 표현된 '당사', '회사', '디에스시', '본사' 및 '각 사업장'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본사 및 해외 법인 공장(인디애나, 알라바마, 서배너, 트지네츠, 질리나, 만누르, 푸네, 오르가담, 뱅갈로, 브카시, 이즈밋, 북경, 염성)과 물류센터 전체를 뜻하는 "DSC그룹"으로 일괄 적용 및 해석한다. 본 문서의 내용이 현지 국가의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 현지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본 문서의 기본 원칙은 DSC그룹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당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예방책임】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당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①당사(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당사(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하도급 업체는 당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하도급 업체는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당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당사는 하도급 업체가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조직의 구분】 ①당사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라인(계선)조직과 스텝(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하며, 그 체제는 「별표 1」과 같다.

②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둔다.

③스텝(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④기타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위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①라인(계선)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라인(계선)조직의 관리감독자는 당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스텝(참모)조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정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정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관리자】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12.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건관리자】 ①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보건과의 업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3.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17.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절차·지침·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제14조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보존】 당사는 제15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6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게시판 게시
2.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 【교육의 구분】 ①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당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 【교육담당자】 당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9조 【교육계획의 수립】 회사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책임】 ①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사유

제21조 【정기교육】 ①당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모든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2조 【관리감독자 교육】 당사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내부규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3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당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당사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제26조 【교육방법】 당사는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당사 내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4.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제27조 【교육주기 등】 제19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9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 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 【안전·보건진단】 ①당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당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당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2조 【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1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31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인증】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당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 【안전검사】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10m이상)
13. 산업용 로봇

②당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당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36조 【안전검사의 주기】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37조 【안전검사결과의 조치】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9조 【점검방법】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
2. 작업환경
3. 불안정한 행동
4. 안전장치
5.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0조 【점검결과의 조치】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며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한 후 즉시 안전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시정지시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안전기준】 당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당사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하는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

제43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당사 내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작업중지】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안전·보건표지】 ①당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 5 장 보건관리

제46조 【건강진단의 구분】 ①당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7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당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사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당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진단결과 조치】 ①당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③당사는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당사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 하

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 【작업환경측정】 당사는 「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측정결과 조치】 ①당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제49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당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①당사는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유해물질 표시】 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53조 【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유기용제,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1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3.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4조 【작업복】 ①당사는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보건기준】 ①당사는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6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처치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긴급조치】 ①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비상연락망】 당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9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0조 【재해분석】 ①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7 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61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당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당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 【유해요인조사】 ①당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②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당사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3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당사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장 위험성평가

제6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당사는 작업 공정과 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있다.

③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6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7조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 ①당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 9 장 보 칙

제68조 【안전·보건제안】 ①당사는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당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표창】 ①당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②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70조 【징계】 ①당사는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제71조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소방, 전기, 환경 등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74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당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5조 【규정의 준수 등】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당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